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18호 2018. 10. 11.(목)

조 례

- 남해군조례 제2326호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조례 제2327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규 칙

- 남해군규칙 제1140호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3

공 고

- 제2018 - 1077호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9
 제2018 - 1086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제2018 - 1093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6
 제2018 - 1101호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326호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제2조제4호 중 “실,과장” 을 “담당관, 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27호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경제산업국(지역활성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40호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실·과·단은 관서의 실·과·단” 을 “과는 관서의 담당관·과” 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제3항 중 “별표 1” 을 “별표 1-2” 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다만,” 을 “이 경우” 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중 “기획감사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하고, “실·과·단장” 을 각각 “담당관·과장” 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실·과·단장” 을 “담당관·과장” 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단” 을 “기획예산담당관은 본청 담당관·과”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실·과·단장” 을 각각 “담당관·과장” 으로 하며, “기획감사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제19조 중 “기획감사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하고, “실·과·단장” 을 각각 “담당관·과장” 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하고, 제2항 중 “실·과·단장” 을 각각 “담당관·과장” 으로 하며, “실·과·단 주무 담당” 을 “담당관·과 주무 팀장” 으로 하고,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단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담당관, 과장” 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실·과장” 을 “국장,담당관·과장” 으로 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제23조 중 “실·과·단장” 을 각각 “담당관·과장” 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주관 실·과·단장” 을 “각 담당관·과장” 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하며, 제3항 중 “실·과·단장” 을 “담당관·과장” 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하며, “실·과·단” 을 “담당관·과” 로 한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중 “실·과·단장” 을 각각 “담당관·과장” 으로 하며, “기획감사실장” 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제31조 중 “실·과장” 을 “담당관·과장” 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을 “「지방세기본법」 및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으로 하며, 제2항 중 “과태료·과징금” 을 “과징금” 으로 하고,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를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한다.

제47조 제1항 중 “실·과·단” 을 “담당관·과” 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제2항 중 “실·과·단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실·과·단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50조의2 제3항 제3호 중 “실·과·단”을 “담당관·과”로 한다.

제54조 제2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제68조 제2항 중 “실·과·단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69조의2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29조 제2항 중 “실·과·단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5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한다. 다만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51조 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현행 별표 1을 별표 1-2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표 1-2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행정복지국장	-	-
징 수 관	행정복지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행정복지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행정복지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행정복지국장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지 출 원	지출업무 담당 팀장	의사업무 팀장	지출업무담당 팀장
수 입 금 출 납 원	징수담당 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팀장	세입업무 팀장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 주무담당 팀장	-	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 팀장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회 계 책 임 관	-	-	-
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분 임 징 수 관	-	-	-
재 무 관	-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 임 재 무 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총괄부채관리관	-	-	-
부 채 관 리 관	-	-	-
기금총괄관리관	-	-	-
통 합 지 출 관	-	-	-
지 출 원	-	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 입 금 출 납 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팀장	세입업무 담당자 보건진료소장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자 보건진료소장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재무업무담당	재무업무담당자	재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별표 1-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3조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그 밖의 관서
<input type="radio"/> 체육시설사업소 <input type="radio"/> 읍·면 <input type="radio"/> 보건소 <input type="radio"/> 농업기술센터 <input type="radio"/> 상하수도사업소	<input type="radio"/> 지출원이 없는 청·소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1077호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2. 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대상 및 감경범위와 감경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징금 감경대상자를 정함(안 제2조)
 - 과징금 감경기준 및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과징금 감경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과징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를 정함 (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 연락처 : 전화055-860-3835, 팩스860-3882

남해군 규칙 제2018-1077호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 노인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6.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9.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희귀·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제3조(감경기준 및 범위) ① 과징금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별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대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5조(감경신청 및 처리)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감경사항 관리) 군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 감경대상별 감경비율(제3조제2항 관련)

감 경 대 상	감경비율	구 비 서 류	비 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0%	수급자 증명서 등	
2. 65세 이상 노인 및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50%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가. 1급 ~ 3급 나. 4급 ~ 6급	50% 40%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4. 기소유예·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50%	법원, 검찰청의 사건처분 통지서 사본	
5.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50%	법원증명서 등	
6. 상대방의 허위, 거짓 또는 강박에 의해 위반한 경우	50%	경찰 또는 조사 기관의 확인서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0%	행정기관 피해 사실확인서	
8. 희귀·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0%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30%	감경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업소 소재지	
	업소명		전화번호	
적발일시			행정처분일자	
감경사유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 붙임 : 1. 증빙서류 1부
2.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남해군 공고 제2018 - 1086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 설명(안 제2조~제3조)
- 나.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실무반 편성,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다.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라.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마.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및 출동 교통지원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4조)
- 바. 재난현장 긴급구조 자원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자원 지원(안 제15조~제16조)

- 사. 재난현장의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아.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자. 재난현장 통제 요청 및 통신망 확보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0조)
- 차. 통합지원본부의 철수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카. 대책본부장 권한의 통합지원본부장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년 10월 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55-860-3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2018 - 1086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남해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과·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가 없을 경우 재난안전총괄과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③ 재난이 오지마을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 출동 교통지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 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 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 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제17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조치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교통지원 요청
4.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5.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6.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조치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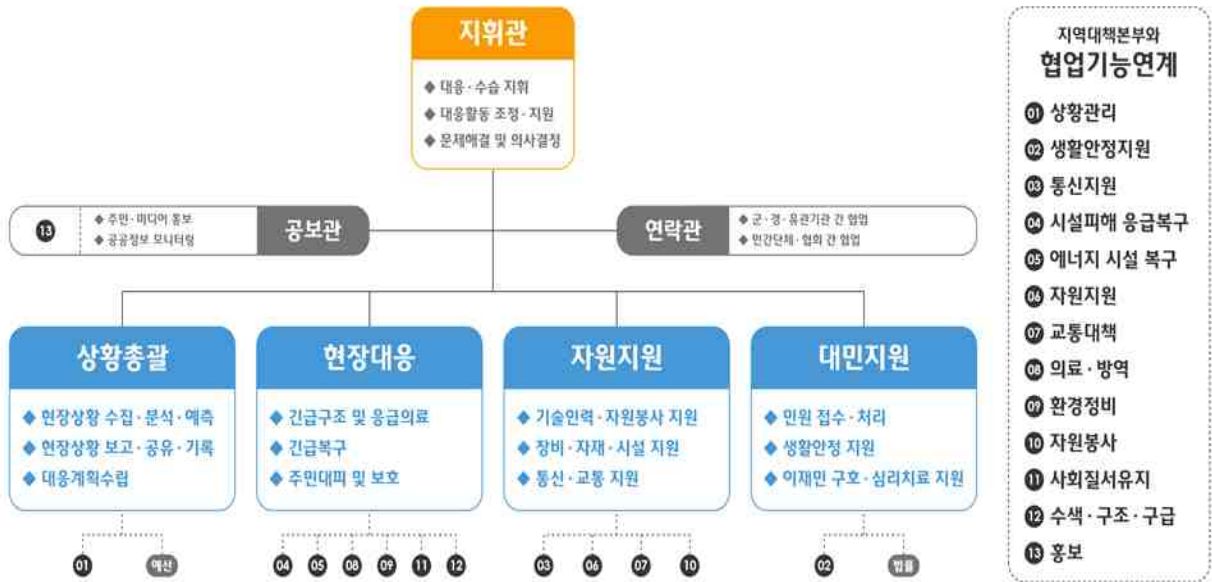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 장 대 응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4의2. <생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11. <생략>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② <생략>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생략>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⑥ <생략>

⑦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 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⑧~⑪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소방청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 ⑦ <생략>

□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①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제단장은 법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통제단장은 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시설·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의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 ⑪ <생략>

□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군 소속 실·과·단·소장

2.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남해군 공고 제2018-1093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적용을 통하여 인허가 상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완화 정비(안 제16조 제1항 제3호)·표고와 관련한 기준지반고와 사업부지 간 표고차가 50m를 초과하더라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10월 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084,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860-30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의견제출서

자치법규명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남해군 관리지역상 자연취락지구를 기준으로 반경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는 적용을 제외하며, 발전시설을 제외한 용도로서 표고차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표고는 해당 토지의 주 진입로가 접하는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경계표면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다만, 남해군 관리지역상 자연취락지구를 기준으로 반경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는 적용제외한다.</p> <p>4. (생략)</p>	<p>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표고는 해당 토지의 주 진입로가 접하는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경계표면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다만, 남해군 관리지역상 자연취락지구를 기준으로 반경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는 적용을 제외하며, 발전시설을 제외한 용도로서 표고차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p> <p>4.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18-1101호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0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오류 정정(안 제1조)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관내 공동주택 현황을 고려하여 20세대 미만인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경과년수는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증권으로 보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경과되어 실질적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대상 범위를 확정함(안 제2조)

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대상 및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항)

-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므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해 가장 사업 수요가 많은 방수공사 및 재해 관련 보수와 주민편의시설 보수 등을 추가함.

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회수 조정 및 제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2항)

- 동일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사업의 혜택의 균형 집행을 위하여 중복 지원 기한 조정

마.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8조~14조)

- 현 조례 상 지원대상자 결정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10월 1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076,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경관디자인팀(860-30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1부.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2018 - 1101호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
2.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3.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단,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4.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
5.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6.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7. 주차장의 증설 및 위치이동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10.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11. 옥상방수공사
12.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13.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4.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지원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비용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명서류 1부

제5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남해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계약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